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2. 5. 23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임의감면 또는 부당하게 감면 받는 사례를 방지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3조제1항 제5호 “5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”를 삭제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 제13조제1항 제5호 “ 5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”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</u>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.	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 ---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 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----- ----- .	제13조(사용료의 감면) ①개 정안과 같음
1. ~4. (생략) 5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	1. ~5. (현행과 같음)	1. ~4. (현행과 같음) 5. 삭제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칭	위치	기능
박정희체육관	구미시 박정희로 379-19	농구, 배구, 각종 실내경기 및 행사
시민운동장	구미시 박정희로 375-22	육상, 축구, 각종행사
보조경기장	구미시 박정희로 375-20	육상, 축구, 농구, 배구, 인라인롤러
금오테니스장	구미시 산책길 105	테니스

제3조제1호 중 “박정희체육관 및 시민 운동장, 보조경기장”을 “박정희체육관, 시민 운동장, 보조경기장, 금오테니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전투경찰, 의무경찰”을 “전투경찰대원,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공익근무요원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때는 사용허가서 [별지제2호서식]를 교부하여야”를 “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하계 (3월~10월)	동계 (11월~2월)
조기	05:00 ~ 08:00	06:00 ~ 09:00
주간	08:00 ~ 19:00	09:00 ~ 18:00
야간	19:00 ~ 23:00	18:00 ~ 23:00

제10조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단체 이용시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단체 회원 명부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”을 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”로 하고,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23조 중 “체육 및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”을 “체육 및 생활체육관련 단체, 법인 및 민간 등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의2서식,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지 제2호의2서식]

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

□ 시설명 :

[illegible]

[별지 제2호의3서식]

단체 회원 명부

□ 시설명 :

□ 단체명 :

□ 회원수 : 명

[illegible]

[별지 제2호의4서식]

사용료 감면신청서

체육경기(행사)명	
사용시설명	
사용목적	
사용기간	
감면금액	
감면사유	

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구미시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검 인 신 청 서						
행사(대회)명						
시 설 명						
일 시						
주최 및 주관	주 소					
	성명(단체명)					
검 인 내 용						
구 분	관 램 료	매 수	비 고	초 대 권	구 분	매 수
지 정 석					지 정 석	
어 른					어 른	
청소년·군인						
어린이·노인						
단 체 (회원)						
계					계	
위와 같이 관람권·초대권에 대한 검인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청인 (인) 구미시장 귀하						

[별표 1]

체육시설 전용사용료(제10조 관련)

구분		평 일		토일공휴일		초과 사용료 (시간당)
		체육경기	체육경기 외	체육경기	체육경기 외	
박정희 체육관	주경기장(1면당)	100,000원	300,000원	150,000원	400,000원	20% 가산
	보조경기장(1면당)	50,000원	100,000원	80,000원	200,000원	
	유 료 입 장	입장수입의 10%				
시 민 운동장 주경기장	트랙	60,000원	100,000원	90,000원	200,000원	
	필드	150,000원	250,000원	250,000원	350,000원	
	행사	600,000원		900,000원		
	유 료 입 장	입장수입의 10%				
인라인롤러장		45,000원	85,000원	65,000원	120,000 원	
보조 경기장	트랙	40,000원	80,000원	65,000원	160,000원	
	필드	80,000원	160,000원	160,000원	240,000원	
	행사	400,000원		500,000원		
금오 테니스장	실외1면당	20,000원	30,000원	40,000원	50,000원	
	실내1면당 (2시간기준)	15,000원	20,000원	20,000원	25,000원	

※ 체육경기란 「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3조제12호에 따른 체육경기를 말함.
(단, 일반단체, 기업체, 동호회 경기 및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를 적용함.)
※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보조경기장만 사용 시 금액임.
※ 부속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함.
※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.
※ 시민운동장 주·보조경기장 이용인원수가 1,000명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.(행사에 한함)
○ 1,000명 이상 ~ 2,000명 미만 : 기본료의 50% 추가
○ 2,000명 이상 ~ 5,000명 미만 : 기본료의 100% 추가
○ 5,000명 이상 : 기본료의 150% 추가
※ 사용시간은 조기, 주간, 야간 각 1회를 적용함.
(단, 축구경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)

체육시설 이용사용료(제10조 관련)

구 분			기준		이용료		비고
					개인	단체	
금요 테니스장	실외	주간	평일	1면 2시간	1인 2,000원		1. 단체는 동일 소속팀 으로 30명 이상을 말함 2. 조가야간사용은 조명사용료를 포 함
			토·일 공휴일	1면 2시간	1인 2,500원		
			월 회원 (1면 1일 2시간)		1인 20,000원	단체 월회원 사용료 적용	
		조가 야간	평일	1면 2시간	1인 3,000원		
			토·일 공휴일	1면 2시간	1인 3,500원		
			월 회원 (1면 1일 2시간)		1인 30,000원	단체 월회원 사용료 적용	
	실내	조가 주야간	평일	1면 2시간	1면 24,000원		※ 실내는 월회원을 적용하지 않음
			토·일 공휴일	1면 2시간	1면 30,000원		

1. 어린이, 청소년 및 군인의 사용료는 기본료의 40%를 징수한다.

2. 초과사용 시간당 사용료의 50%를 가산한다.

3. 테니스장 단체 월 회원 사용료(1면당)

- 10명 미만(주간 50,000원, 조가·야간 100,000원)
- 10명 이상 ~ 20명 미만(주간 100,000원, 조가·야간 200,000원)
- 20명 이상 ~ 30명 미만(주간 200,000원, 조가·야간 300,000원)
- 30명 이상 ~ 40명 미만(주간 250,000원, 조가·야간 350,000원)
- 40명 이상 (주간 300,000원, 조가·야간 450,000원)

[별표 4]

부 속 시 설 사 용 료(제10조 관련)

구 분		사 용 료	비 고
전기료	조명탑(라이트)	기본료+실사용료+기본시설사용료	기본시설사용료 주:40,000원 보조:40,000원 테니스장:40,000원
	일반전기	기본료+실사용료	
전광판	시민운동장	기본료+실사용료+기본시설사용료(25,000원)	
	보조경기장	기본료+실사용료+기본시설사용료(25,000원)	
	박정희체육관	기본료+실사용료+기본시설사용료(20,000원)	
	금오테니스장	기본료+실사용료+기본시설사용료(25,000원)	
냉난방	냉 방	기본시설사용료(25,000원) + 연료대(가스료)	
	난 방	기본시설사용료(25,000원) + 연료대(가스료)	
음향시설		기본시설사용료(20,000원) + (마이크수 × 5,000원)	
수도료		실사용료	수도요금

※ 기본료 및 실사용료는 전기사용에 대한 기본료 및 실사용료를 말한다.

※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, 기타 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징수한다.